



노인 폭력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신고 · 상담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은?

-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서비스, 일시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등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예방 교육, 노인인권 교육 등
- 노인인권보호사업 : 노인인식개선 사업, 효행교육 등
- 협력체계 구축사업 : 자문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
-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 언론 홍보, 학술행사, 캠페인, 사진전 등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를 하게되면?



알기 쉬운 노인학대 사례

신체적 학대



저소득의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장남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주로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알코올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서적 학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된다"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

성적 학대



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할아버지가 성취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경제적 학대



노부부는 "아파트 구입자금을 보태주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약속을 믿고 거주하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함께 산 지 얼마되지 않아 아들은 태도를 바꿔 "단칸방을 구해 줄테니 따로 나가서 살아"고 강요하였다.

방임



사업 실패 후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생활고와 부양부담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모에게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또한 방도 청소해주지 않아 음식물이 몇 달째 썩고 있는 등 비위생적인 거주 환경을 방치하였다.

유기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모 부양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는 상황을 반복하였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모를 이웃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노인학대 행위는 이렇게 처벌 받습니다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희롱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1.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3.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4.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있는지 살핍니다.
5.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6.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